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9월 21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개정이유

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 참여기구인 ‘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’ 활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해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해 청년 참여기구인 ‘청년 네트워크 구성’ 규정 신설 (안 제12조의2)
- 나. 그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정비 (안 제6조, 안 제11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:사회적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전체메뉴-구청소식-공고-입법예고)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- ※ 보내실 곳 : (03660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(연희동)
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
- 다. 기타문의 : ☎ 02-330-1478, FAX 02-330-8045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◎ 조례명 :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화번호 :

제정내용	의 견	비고